

부서장추천위원회규정

부서장추천위원회규정

<규정명 변경 2010.2.11>

제정 2007. 7. 12.

개정 2007. 11. 16.

일부개정 2010. 2. 11.

일부개정 2015. 12. 28.

일부개정 2016. 3. 29.

일부개정 2017. 8. 29.

일부개정 2018. 8. 29.

일부개정 2018. 12. 19.

일부개정 2022. 8. 18.

일부개정 2024. 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의 부서장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 2. 11, 2016. 3. 29, 2018.8.29.>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인에 부서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서장 후보를 복수로 원장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18. 8. 29>
③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임용될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일부개정 2010. 2. 11, 2018. 8. 29>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원장은 위원회를 부서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7인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단,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일부개정 2018.8.29., 2022.8.18.>

1.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일부개정 2017.8.29., 2018.8.29.>
3. 중소벤처기업부의 담당과장, 울산광역시의 담당과장,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 부서장추천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17.8.29., 2018.8.29.>

4. 원장이 추천하는 1인<신설 2022.8.18.>

② 원장은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직속부서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④ 법인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R&D, RIS, RDA 등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추천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법인의 임·직원(직속부서장 포함) 및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일부개정 2022. 8. 18.>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원장이 별도 정한다.<일부개정 2010. 2. 11, 2018. 12.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관련부서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부서장은 복수의 후보자를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현 부서장을 선임한다.<일

부개정 2018. 8. 29>

- ② 후보추천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부서장 후보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0. 2. 11, 2018. 8. 29>
- ④ 위원회는 부서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 2. 11, 2018. 8. 29>
- ⑤ 정관 제28조 2항에 따른 현부서장의 연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현 직속부서장을 단독 부서장 후보자로 원장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11.16.><일부개정 2018. 8. 29., 2024. 3 .29.>
- ⑥ 부서장추천위원회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신설 2024. 3 .29.>

제8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부서장 선정 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1>

부 칙<200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시행일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부서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직속부서장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한다.

부 칙<2007.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부서장으로 임명된 자는

■ 부서장추천위원회규정

이 규정에 의하여 직속부서장 또는 부설기관장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승계를 보장한다. 단, 임기의 승계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 칙<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2018.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득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